

#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회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번호	30
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11. 16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「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」 개정에 의하여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지원 등의 차원에서 무리하게 자연재난으로 판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명피해 심의회위원회를 폐지하고 피해 보고 체제를 개선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평창군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06. 9. 8 ~ 10. 2 실시결과 의견없음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 계 법 령

## **[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]** (2006. 5 중앙재난대책본부)

### □ 인명피해 처리 세부지침

- 인명피해 보고 : 발생 즉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즉보
  - 보고계통 : 시·군·구 재난안전대책본부 →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
  - 시·군·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시·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대한 보고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보고와 동시 이행
  - 시·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NDMS 인명피해 입력 즉시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 한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재입력 지시 등 이행
-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아닌 경우일지라도 그 사유를 명기하여 NDMS 인명피해 해당 입력란에 즉시 입력
- 외국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 통계에는 포함시키나 복구계획 수립에서는 제외
- 피해발생 시도에서는 사망,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파악 주소지의 시·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즉시 FAX 등으로 통보
- 선원인 경우 선주나 선박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### □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폐지(2006. 5. 15)